C - 63 - 2012

## 흙막이공사(C.I.P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, C.I.P 흙막이공사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C.I.P 흙막이공사 작업에 적용한다.

## 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C.I.P(Cast In Place Pile)"란 지반 천공장비를 사용,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하여 토사를 배출시킨 후 공내에 H-Pile 또는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 터를 타설하는 주열식 현장타설 말뚝으로 가설 흙막이, 물막이 연속벽체 등으 로 사용하는 공법을 말한다.
  - (나) "띠장(Wale)"이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,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보 등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.
  - (다) "버팀보(Strut or Raker)"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.
  - (라) "흙막이 벽"이란 지반굴착 시 붕괴 및 인접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.
- (마) "슬라임(Slime)"이란 보링, 현장타설 말뚝 등의 시공을 위한 지반 굴착